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41
----------	------

발의연월일 : 2025. 3. 18.

발의자 : 한준호 · 김문수 · 박용갑

이건태 · 박균택 · 정준호

허성무 · 정태호 · 이용우

강유정 · 박상혁 · 이해민

김원이 · 김성회 · 김동아

조승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 개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 정보의 개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개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개신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으로 개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밀도로지도 개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축하고 개신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 · 변경을 반영하
여 주기적으로 개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 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구축하고</u> <u>갱신할 수 있다.</u> <후단 신설></p> <p>② · ③ (생략)</p>	<p>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 ----- ----- ----- ----- <u>구축하여</u> <u>야 한다.</u> 이 경우 도로노선, 도 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 · 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u>갱신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